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변경 (순자산가치의 80% 하한 설정)

2016. 12. 29. 입법예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개정내용 중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개정안은 2017. 1. 19.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17. 2. 3. 공포 ·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인바, 이러한 개정 규정은 특수관계인간의 자산양수도 거래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또는 저가양수 등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가’ 산정에 있어서도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가중평균 방식이 순순익가치가 낮은 법인의 주식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문제점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중평균 방식에 의한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현 행	개 정
■ 비상장주식 평가 • (원칙) 순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액 - 1주당 순순익가치 = 3년 가중평균 순순익액 / 10% - 1주당 순자산가치 = (자산 - 부채) / 발행주식 총수 〈신 설〉	■ 평가방법 변경 • (좌동) • 국가별보고서 • (하한설정)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 * 비상장주식 평가액 = Max(가중평균치, 순자산가치의 80%)

순자산가치보다 순손익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한 주식의 증여·양도를 계획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일 이전의 증여·양도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46	E-Mail. hjikim@shinkim.com
● 노형철 세무사	TEL. 02 316 4483	E-Mail. hcrho@shinkim.com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TEL. 02 316 4219	E-Mail. ihchung@shinkim.com
● 이정진 전문위원	TEL. 02 316 4417	E-Mail. jjlee@shinkim.com